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4조 개정을 위한 입법 건의(청원)

- 실명거래의 원칙 강화 및 비밀보장의 예외 축소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제안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개혁위원회 정호철 간사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상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천강주

2022. 8. 23.

I.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

1. 청원의 취지

1993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입법 청원으로 도입된 금융실명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실명법”이라고 합니다.)」 제3조 제1항은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실명”)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는 금융실명거래의 대원칙을 천명하고 지난 30년의 세월동안 금융거래에서 신분증 확인을 통한 실명거래는 당연한 상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화되면서 저희는 현재 우리사회 내에서 금융실명거래의 원칙이 붕괴되고 있는 그 현장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2015년 5월 금융혁신의 일환으로의 금융실명거래의 확인방법에 관한 유권해석 변경하여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과 절차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소위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이라고 합니다.)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 마련 2017. 7. 개정안]」를 합리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핀테크 기업들이 연이어 각종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모바일 간편인증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등장은 비대면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보편화시키면서 이러한 경향이 실명확인 서비스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좀 더 편한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선택하면서 기업도 이러한 움직임에 대응하여 인증 서비스의 간편화를 추구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본인인증 서비스가 간편함을 넘어서, 금융회사등의 비용 문제 때문에 「주민등록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분증 진위확인 의무·기준·표준¹⁾을 전자금융거래 정보처리시스템에 적법하게 적용하지 않아 본인인증 서비스의 하자과 시스템의 오류로 인하여 실지명의자의 신분증의 진위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등록증의 사진을 가려도, 영터리 사진으로 위·

1) 주민등록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 관련 고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단말기 표준규격」

변조를 하여도 비대면 실명확인이 통과되는 등 현재 금융기업이 제시하는 본인인증 서비스는 실명확인의 기본적인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민간금융협회들이 제공한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규제혁신 샌드박스 대상으로 채택하는 등 자율규제에만 의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신분증 사본인증이라는 시스템 상의 허점을 악용하여 비대면 무단 인출사고나 대출사고 등 각종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고로 인한 금융소비자들의 재산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범정부 합동수사 등 특별단속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사건·사고를 억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저러한 금융회사들은 영터리 신분증 사본인증 시스템을 개선하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중 신분증 원본대조가 가능한 진위확인 시스템을 갖춘 모바일뱅킹은 현재 단 한 곳도 없다는 점입니다. 업계관계자에 따르면, 시중은행, 중앙회·협동조합, 저축은행뿐 아니라 캐피탈, 카드사, 보험사, 증권사, PG사(“○○페이” 등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각종 모바일 금융플랫폼 (APP·Web·MTS) 등 금융업계 전반에서 영터리 사본인증 시스템만 현재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금의 구체적인 피해사례는 공통적으로 비대면 환경에서의 본인확인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에서 기인합니다. 개인의 경우 본인확인은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수단으로 이루어지는데, 대표적인 방식인 ‘주민등록증 제출’은 비대면 환경에서 특별히 그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은 대면 환경에서 강력한 본인확인의 효력을 지니고 있으나, 비대면 환경에서는 도용 및 위조에 특히나 취약합니다. 대면 환경에서는, 행정안전부 고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단말기 표준규격」에 따라 행정기관 및 금융기관의 대면 창구에서는 본인확인의 경우 자체 단말기를 통해 주민등록증의 진위여부를 확인합니다. 나아가 행정기관이 아닌 경우에도, 주민등록증은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색변환문양, 돌출문자(양각), 레이저 인쇄(홀로그램), 다중 레이저 이미지 등의 장치가 있어 이를 통해 진위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촬영 및 복사 등의 경우 이러한 표식이 드러나지 않으며, 나아가 일부 인터넷은행의 본인확인 서비스의 경우 촬영된 주민등록증의 발급일자 역시 직접 수정할 수 있어 사실상 진위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촬영된 주민등록증은 '실지명의의 확인이 가능한 증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계좌인증 등과 결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원본에 준하는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휴대전화의 개통할 당시나 또는 재건축사업 조합설립 동의와 같이 주민등록증을 복사하여 타인에게 제출하는 경우, 그 사본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의로 대포폰을 개통하거나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의 사본과 원본을 비대면으로 구분하는 시스템이 현재의 금융기관에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주민등록증 원본의 강제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증 원본의 경우에도, 제3자가 무단으로 이를 획득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금융거래를 시작하는 등 관련 피해 사례가 존재하며, 원본 무단 도용의 문제는 제3자가 친척 등 본인과 가까운 사이인 경우 더욱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주민등록증만으로 휴대전화를 손쉽게 개통할 수 있는 환경과, 대부분의 온라인 환경에서의 본인인증이 본인명의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환경이 결합하여, 원본 주민등록증 도난이 휴대전화 개통으로, 나아가 거짓된 본인인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고려했을 때, 주민등록증 원본을 통한 인증 역시 금융사기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대책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본인확인의 적절한 방식이 법제화된다고 하더라도, 금융실명법상의 금융거래에 여신행위가 포함되지 않아 여신거래에서 실지명의 거래의 구체적인 책임의 근거가 취약하고, 나아가 금융기관으로서 본인확인의 절차적 측면만 준수하였다는 이유로 소홀한 본인확인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게 되어, 본인 사칭 금융사기에 대한 실질적인 예방 및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본인확인 의무를 명확히 하고, 실효적인 본인인증이 이루어지도록 목표하는 이하의 법개정을 청원합니다.

2. 외국의 비대면 본인확인 법제 현황

가. 미국

2001년 「USA PATRIOT Act(The 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providing Appropriate Tools Required to Intercept and Obstruct Terrorism)」가 제정되었습니다. 「USA PATRIOT」의 Section 326에 따라 BSA(Bank Security Act; 금융거래보고 의무법)이 2003년 개정되어 CIP(Customer Identification Program; 고객확인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에 따라 재무부 규정(Treasury Regulation)인 「31 CFR 103.121」이 CIP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CIP가 목표로 하는, 금융기관이 고객의 본인임을 확인할 의무를 포괄적으로 KYC 규칙(Know Your Customer Rule)으로 지칭합니다.

CIP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기관은 계좌개설에 있어서, 우리나라와는 달리 명의인과 실소유자 모두에 대하여 실지명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정확한 신원확인 및 위험평가의 의무를 CDD (Customer due diligence; 고객확인 의무)라고 지칭하며, CDD에 따른 실지명의 확인절차는 이름·생년월일·주소·납세자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때, CDD를 바탕으로 신원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거나, 자금세탁이나 테러에 이용될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계좌의 경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감시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EDD(Enhanced due diligence; 강화된 고객확인 의무)라고 지칭한다. CIP에 있어서 CDD와 EDD를 통한 고객확인은 정확한 고객확인이 이루어졌다는 합리적인 믿음의 수준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때, 앞서의 CDD를 위한 이름·생년월일·주소·납세자번호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양한 수단이 활용될 수 있는데, 정부발행 신분증, 고용카드, 디지털 신분증 등이 활용될 수 있으나, 합리적인 믿음의 수준에 이를 것을 요구합니다. 합리적인 믿음의 수준에 이르렀음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기존의 거래정보로서, 계좌개설 이전에 지속적으로 다른 은행계좌를 운용하여 은행과 거래관계를 유지했음을 증명한다면 합리적인 믿음의 수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기존의 대면확인절차 없이

온라인상의 신원확인만으로는 사실상 계좌를 개설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상에서 금융 거래를 개시하려면 반드시 기존에 은행에 직접 출석하여 대면으로 본인확인을 거친 은행계좌를 보유함으로써 본인임을 인증해야 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절차를 거쳐 온라인상에서 금융거래를 시작한 이후에도, 일정한 본인확인의 절차가 주기적으로 요구됩니다. FFIEC(Federal Financial Institutions Examination Council; 연방금융기관검사협의회)는 2005년 지침서 「Authentication in an Internet Banking Environment」를 발간하고 2011년 증보판을 발간하였습니다. 해당 지침서는 금융기관이 고객의 신원을 확인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대략적인 지침을 규정합니다.

핵심은 단일수단 인증(single-factor authentication)이 명의 도용 사기(account fraud and identity theft)의 주된 원인을 인지하고, 다원요인 인증(multi-factor authentication)을 통해 이를 방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이용자가 알고 있는 것(비밀번호, PIN 등)’, ‘이용자가 갖고 있는 것(ATM 카드 등)’, ‘이용자인 것(지문 등)’ 등의 요소를 구분하고 2가지 이상의 요소를 활용하는 다원적 방식의 활용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고객을 식별할 것을 요구합니다. 나아가, 해당 지침서는 본인확인의 구체적인 수단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금융기업의 본인확인은 적극적 확인(positive verification; 신뢰가 이미 부여된 제3자의 정보와 대조), 논리적 확인(logical verification; 지역번호, 우편번호, 주소 등의 논리적 일관성 확인), 부정적 확인(negative verification; 이전의 금융사기와의 연관성 부존재 확인)을 병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미국의 CIP는 다양한 금융기관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금융기관으로서의 일반의무입니다. 따라서, CIP의 수범자는 은행, 신탁회사, 프라이빗뱅크, 미국내 해외은행 대리인 및 지점, 신용조합, 저축은행, 신탁, 증권거래법상 등록의무를 가진 투자중개업자(broker)와 투자매매업자(dealer), 등록하지 않은 증권 혹은 상품의 투자중개업자 또는 투자매매업자, 투자은행 혹은 투자회사, 환거래소, 여행사 수표 혹은 이와 대등한 수단의 발행자 혹은 보유자, 신용카드시스템 운영자, 보험회사, 대출회사, 허가받거나 받지 않은 국내외 자금이체업자, 전신회사, 미 연방 우편회사, 연방정부를 대리한 금융서비스 대리인 등을 포함합니다.

이상으로 볼 때, 미국은 법제상 절차적 의무이행만 완료할 것을 요구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합리적 믿음의 수준’에 이르는 정도의 고객확인을 요구하여,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인 고객확인 의무를 부과합니다. 금융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은 구체적인 방식을 제시하여 금융기업이 해당 절차를 준수하는 것에 초점을 두게 될 가능성이 있으나, 「Authentication in an Internet Banking Environment」은 적극적, 논리적, 부정적 확인 등의 추상적인 본인확인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금융기관에게 실질적인 본인확인의 강력한 책임을 부여합니다.

또한, 금융실명법·특정금융정보법·「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등 다양한 법제에 의해 고객확인 의무가 부과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단일한 CIP 규정을 통해 포괄적으로 금융기관을 규제하며 우리나라처럼 비대면 온라인 계좌개설을 하는 것은 사실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환경에서의 본인인증 방식을 규율하는 미국의 「Authentication in an Internet Banking Environment」과 우리나라의 금융위원회가 2015년 유권해석을 한 내용을 비교하면, 공통적으로 특정한 본인확인의 기술을 강제하는 것이 아닌, 복수의 본인인증 수단을 통해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할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금융기관 가운데 우리나라와 같이 전적으로 온라인상에서 최초계좌의 개설을 위한 본인확인이 이루어지는 곳은 찾아보기 어려우며, 비대면이라고는 해도 우편 등으로 실물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거나, 기존에 이미 방문을 통해 본인확인을 거친 계좌를 통한 인증을 요구합니다.

나. 유럽

EC(European Commission;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범죄수익과 관련된 자금세탁 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금융시스템에서의 신원확인의 대략적인 지침(Directive)을 제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1991년의 「Directive 91/308/EEC」, 2001년의 「Directive 2001/97/EC」, 2005년의 「Directive 2005/60/EC」가 있습니다. 각각의

지침은 금융기관에게 KYC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특히 비대면 본인확인의 경우, 각 회원국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비대면 인증에 관한 특별한 조치를 취할 것이 요구됩니다. 다만 EU 내에서도 각 국가별로 KYC 및 비대면 상황에서의 KYC(eKYC) 법제화 현황은 상이하며, 다음의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독일,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은 비대면 본인확인을 일체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존재하더라도 본인확인의 업무는 다른 은행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둘째로, 이외 EU 국가들은 온라인 본인확인 이후,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우편을 보내 이를 수령해야만 나머지의 추가적인 인증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고객은 온라인에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업로드 하며, 이때에는 이름이 등록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소 증명, 서명, 수입 증명서류가 포함됩니다. 이후 금융기관은 신용카드와 인증코드를 우편을 통해 전달하기에, 사실상 우리나라와 같은 형태의 완전한 온라인 방식의 비대면 본인확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셋째로, 영국 역시 EU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비대면 본인확인이 가능하지만, 전화 연락, 우편, 신원보증서 수취 등의 방식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즉, 앞선 국가들과는 달리 비대면에서의 본인확인 방식을 명확하게 규정하지는 않으나, 금융기관에서 현존하는 위험과 비교하여 적절한 신원확인 조치를 스스로 준비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미국의 비대면 본인확인 방식과 유사하며, 금융기관은 자체적으로 충분한 수준의 본인확인 방식을 마련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다. 일본

2007년 「범죄로 인한 수익의 이전방지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 이전방지법”）」이 제정되었으며, 여기에서 비로소 비대면 계좌개설이 허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신분증 사본 수신, 우편 확인, 거래목적과 직업의 확인의 세 가지 절차를 거쳐 이

용자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대면 본인확인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는 ‘고객 확인 절차(Conduct Customer Identification)’가 있으며, 개인의 본인확인 방식으로 신분증이나 그 사본의 수신과, 거래목적과 직업 정보의 수신에 더한 우편확인(비밀번호 송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대면 인증의 이용자는, 금융기관의 온라인 사이트에 신분증명서류를 제출하고, 이후 금융기관이 우편으로 송부한 현금카드와 토큰을 등록해야 합니다. 이때, 신분증명서류는 금융기관별로 다양한데, 신분증명서류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거나, 우편으로 신분증명서류를 금융기관에 송부하거나, 온라인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는 등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범죄수익 이전방지법에 따른 비대면 본인인증은 반드시 실물의 송부를 동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11월 범죄수익 이전방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우편의 송부 없이 온라인 상 본인확인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비대면 본인확인 서비스를 통상적으로 eKYC(electronic Know Your Customer)라고 칭합니다. 해당 시행규칙 개정 이후 비대면 본인확인이 허용됨에 따라, 크게 4가지 방식의 비대면 본인확인 서비스가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본인확인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이용자가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과 동시에 본인의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이외에도, 전용 소프트웨어를 통해 신분증의 IC칩을 판독한 이후 신분증을 촬영하여 전송하는 방법, 은행 및 신용카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이체 및 거래명세서를 전송하는 방법, 전용 소프트웨어를 통해 JPKI(일본의 본인확인 서비스)의 전자서명을 이용하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또한 LIQUID라는 보안 솔루션을 통해 AI를 통한 부정 감지 서비스를 전개하고 고액 거래 시에는 더 높은 보안 레벨을 요구하는 등의 절차가 존재합니다. 일부 eKYC 도입 기업은 신분증 위조나 대용에 대비하여 신청 단계에선 진위 구분을 못하더라도 그 다음 단계에서 진위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였으며, 딥페이크를 통한 신분증 사기 역시 대응절차를 마련하는 중에 있습니다.

라. 소결

이상에서 각각 미국, 유럽, 일본의 비대면 및 온라인 본인확인 방식을 정리하였습니다. 해외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최초의 계좌개설의 경우 미국과 유럽은 사실상 완전 온라인 방식의 본인확인 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며, 대면확인의 방식을 채택하고, 비대면의 경우에도 우편을 통해 증명서류를 송부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일본의 경우 온라인 개설이 가능하지만, 별도의 신분증 진위확인 프로그램을 동반하여 사실상 신분증의 원본이 필요합니다. 이는 신분증의 진위확인 절차가 사실상 누락된 우리나라의 신분증 본인확인 절차와는 상반됩니다.

둘째로, 상기 국가의 경우 주민등록증과 같은 국가 지정 신분증을 의무로 발급하는 경우가 없기에, 역설적으로 본인확인의 절차가 보다 복잡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주민등록증만 제시한다면 본인확인으로 간주하는 ‘주민등록증 일변도’의 신분확인이 이루어지는 반면, 외국은 여권, 사설 신분증, 거래명세서, 거래내역서, 세금납부내역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신분확인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외국은 반드시 복수의 보충적인 인증수단(대표적으로, 소지자의 영상 확인 등)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는 본인확인에서 신분의 도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셋째로, 외국의 경우 ‘최초 계좌개설’에 대하여 우리나라에 비해 엄격한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좌개설에서 본인임이 검증된 경우, 그 후의 지속적인 거래에 대해서 별도로 본인확인을 할 필요성이 적어집니다. 이는 우리나라와 달리, 상기 국가에서 ‘신분증 위조를 통한 대출사기’ 등의 이슈가 적은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즉, 첫 개설에서 본인확인만 제대로 시행한다면, 이후 사기범이 해당 계좌로 대출을 실행하여 범죄를 도모할 가능성이 매우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인터넷 전문은행의 존재와 진위확인 없는 신분증 인증 시스템으로 인하여, 최초 계좌개설 역시 가해자가 쉽게 시도할 수 있기에, 이후의 대출사기 등 금융사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따라서, 전형적인 신분증 도용을 통한 대출사기를 중심으로 본다면, ‘최초 계좌개설’ - ‘대출실행’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에서, 외국은 ‘최초 계좌개설’에서 철저한 본인확인이 이루어지므로 도용의 요소가 ‘대출실행’으로 연결될 여지가 없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최초 계좌개설’이 상대적으로 쉬워, 불법의 요소가 ‘대출실행’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계좌개설’ 혹은 ‘대출실행’ 둘 중 하나에서 만이라도 확실한 본인확인이 이루어진다면 본인을 사칭한 대출사기는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넷째로, 외국의 경우 금융기관에 보다 강력한 본인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본인확인의 결과가 ‘합리적인 믿음의 수준’에 이를 것을 요구하며, 영국과 일본의 경우에 역시 구체적인 본인확인의 절차를 정하지 않고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충분한 정도의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시 금융기관은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여 과실이 없다’는 식의 항변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절차적 규정을 준수하면 상대적으로 책임을 면제받기에 쉬운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여신’에서 금융기관의 본인확인 의무는 특이하게도 금융실명법상에서 누락되어 있으며, 다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4에 규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대출사기에 의한 피해가 심각한 현재의 상황에서, 여신거래가 실지명예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

3. 청원의 이유 및 내용

가. 동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 개정(추가)

우선, 여신거래는 실명이 확인되어야만 실행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융실명법의 적용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핀테크 기술 발전으로 인해 비대면 여신거래가 가능하게 되었고, 신분의 도용만으로 여신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어 사기피해가 발생하는 데도 제도적으로 이를 억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4에서 대출금에 대하여 금융회사등에 책임을 지우는 규정이 이미 있지만, '본인확인조치'가 어떠한 절차를 의미하는 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규정은 오히려 금융실명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금융실명법에서 보다 일반적인 본인 확인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금융실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여신행위는 금융거래에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금융실명법상으로는 여신거래를 실지명의로 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 및 「금융실명제 종합편람」에서 역시 드러납니다. 또한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 등을 규제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역시 여신거래가 실지명의로 이루어져야 함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현재 여신거래에서 금융기관이 이용자의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의무인 동시에, 「민법」 또는 「상법」에 의해 금융기관이 채권자로서 여신고객의 실명을 확인하여 법적으로 채무자를 특정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합니다. 만약 금융실명법에서 여신거래를 규정한다면, 여신거래에 대한 본인확인 의무를 선언함과 동시에 금융실명법 시행령 개정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의무 및 기준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융실명법 제2조 제1호에는 보험회사가 금융실명법의 적용대상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1993년에 개정된 「금융실명제 종합편람」에 따르면 보험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실명확인대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금융실명제 종합편람」은 금융실명법이 적용되는 금융회사등을 대상으로 금융실명제에 대하여 구체

적인 지침을 마련한 것이고, 이를 어길 시 금융위원회 내부적으로 징계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는 정작 보험금에 대한 내용이 없어 금융실명법 내 조항 사이, 또는 종합편람과 법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고 그로 인하여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신분증을 소지한 자가 타인의 명의로 보험해지환급금을 담보로 한 보험약관대출을 신청하는 등의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금을 금융실명법 적용 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금융실명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 개정 추가(안) >

제2조 제2호(추가) : “금융자산”이란 금융회사들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賦金)·계금(契金)·예탁금·출자금·신탁재산·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수표·채무증서· 대출금·보험금 등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 제3호(추가) : “금융거래”란 금융회사들이 금융자산을 수입(受入)·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 대출·송금·이체 하거나 그 이자, 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또는 그 밖에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 동법 제3조 제2항 제1호 개정(추가)

2020년 170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모바일 금융서비스 토스에서 명의 도용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토스의 웹 결제 인증 방식의 보안상 취약성이 드러난 것입니다. 해당 사건의 추정 원인 중 하나로 신분증 도용이 거론되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출신인 최운호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고객 신분증이 도용돼 사건이 발생했어도 토스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5년 동안 1천만 장의 신분증이 분실되었고, 이 중 5%만 본인에게 돌아왔다는 통계가 있다”면서 “이 신분증을 믿고 다른 보안을 소홀히 한 채 비대면 결제를 하게 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토스 등의 금융회사나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모바일 서비스 이용자의 신분증을 타인이 습득하거나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이 고객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이용자 명의의 전화기를 새로이 개통하는 경우 휴대전화 문자인증만으로 이용자의 기존 계좌 등에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기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실명확인 예외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따라서 새로 개통한 개인장치로 기존 계좌에 접근하는 경우에도 실지명의를 재확인하는 절차를 따로 규정해야 합니다.

< 금융실명법 제3조 제2항 제1호 개정 추가(안) >

“1.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繼續去來), 공과금 수납 및 100만원 이하의 송금 등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단, 기존에 개설한 금융회사나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계좌에 거래자 명의로 등록된 다른 컴퓨터, 전화기, 휴대전화 등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개인장치로는 최초로 접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동법 제3조 제3항 개정(추가)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선언적 금지규정의 성격으로서 다음을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개정 추가(안) >

“누구든지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9조, 제39조의3제4항, 제59조제1호, 제60조를 위반하여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된 타인의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의 증표·서류를 이용하는 행위,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동법 제3조 제7항 개정(변경)

현재는 구체적인 비대면 본인인증의 방식을 금융위원회의 비대면 본인인증 가이드라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회사등이 비용 등의 이유로 금융위원회의 비대면 본인인증 가이드라인을 대다수 준수하지 않고 몰각하여 해당 규정의 의의가 형해화되었고, 현행되는 비대면 본인인증 방식 상에 결함이 다수 존재하여 실지명의 확인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음으로 상당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를 야기함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판례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제5조에 의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이 명시하는 ‘수신자와 작신자가 합의한 절차를 따른 경우’ 실명확인 효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비대면 거래상 합의 절차가 약관 동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약관에 금융소비를 대상으로 한 독소조항을 넣은 뒤 전자문서법 제7조를 이용하여 시스템 상 결함에 대해 면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 제안된 개정안은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해를 철저히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금융실명법 제3조 제7항 개정 변경(안) >

“금융회사등은 비대면거래에서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두 개 이상의 방법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중첩적으로 적용하여 실지명의를 확인해야 한다. 단, 법인의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을 준용한다.

1. 시행령 제4조의2에서 정하는 증표·서류의 사본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하는 방법
2. 금융회사등의 종사자가 제1호에 따라 제출된 증표·서류의 사본 상의 사진을 영상통화 등으로 이용자와 비교하는 방법
3. 해당 금융회사가 다른 금융회사나 종합지급결제사업자에 개설되었고 이용자의 실지명의를 이미 확인된 계좌에 대한 전자자금이체 내용을 확인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용자가 그 계좌를 정당하게 소유하는 자인지를 확인하는 방법

4.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의 접근매체를 이용자 본인만 수취할 수 있는 우편 등을 통해 전달하는 과정에서 제1호에 따라 제출된 증표·서류 상의 사진을 이용자와 비교하는 방법
5. 지문, 정맥 등 이용자가 금융회사등에 대면으로 사전에 등록하여 타인과 구별할 수 있는 생체정보와 비교하는 방법
6. 기타 위 방법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마. 동법 제3조 제8항 신설

앞서 배경에서 언급한대로 신분증 위에 타인의 사진을 붙이거나 사진 부분을 가려도 실명확인이 통과되는 등 신분증의 진위여부를 가려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분증의 진위여부를 가려내는 기술 자체가 존재함에도 금융회사등이 통신비용 등의 이유로 이 기술을 도입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대면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한 신분증의 사본과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신분증 원본 정보를 비교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법제화해야 합니다.

< 금융실명법 제3조 제8항 신설(안) >

“금융회사등은 제7항 제1호의 방법을 시행하는 경우에, 아래 증표·서류의 사본이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해야 하며, 주민등록증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 제35조의 방법을 준용하고 그 외의 증표·서류에 대한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바. 동법 제3조 제9항 신설

< 금융실명법 제3조 제9항 신설(안) >

“실명거래의 절차, 확인 업무의 위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 동법 제3조의2 신설

금융회사등이 비대면 실명확인 시스템 상 결함을 방지하여도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금융소비자가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사기피해를 입어도 금융회사에 대하여 배상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회사등이 비대면 실명확인 시스템의 보안을 강화할 것을 유도하고 금융피해자들의 배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와 제10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접근매체에 관한 사고에 대한 배상규정을 준용하여야 합니다.

해당 규정은 금융회사등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다수의 선진국에서 수용하고 있는 ‘합리적인 믿음의 수준’이라는 개념과 유사합니다. 이 예외조항으로 금융회사등이 비대면 실명인증 사고에 대해 지나치게 많은 손해배상을 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금융실명법 제3조의2 신설(안) >

제3조의2 (준용규정) : “이용자의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의 증표·서류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0조를 준용한다.”

아. 부칙

제1조(시행일) 본 법률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의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일 직후 상당한 기간 내에 개정된 제3조제7항을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II.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1. 청원의 취지

2020년 3월 국내에서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이후, 지난 2021년 5월,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부분적으로 재개되었습니다. 공매도 재개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금융당국은 불법공매도 적발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 공매도 기회를 확충하며, 시장조성자 제도개선 및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등의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고의의 불법공매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과실의 불법공매도 역시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함에 따라, 불법공매도에 대한 제재는 약하지는 않은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공매도로 인한 피해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공매도로 인한 주가하락 및 자본시장 교란에 대한 불안은 효과적으로 치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금융위원회 차원에서 불법공매도의 적발 및 처벌 강화와 기타 공매도 제도의 보완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한국 자본시장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효과적인 사후피해방지 및 구제책이 되기 위해서는 불법공매도로 인한 피해거래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현행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에서는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에 대해 비밀보장을 하고 있고, 동 조항 단서에서는 비밀보장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불법공매도에 대한 적발 및 처벌을 위하여 정보조사를 하는 경우 거래정보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역시 해당 정보를 대중에 공개할 수 없으므로, 불법공매도의 피해자인 일반 주주들은 자신이 당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고, 혹은 피해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고 넘어가게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입은 손해에 대해 정당한 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해외의 경우, 영국 금융감독청(FCA)와 일본 금융청(FSA) 등은 불법공매도에 대해 거래정보는 물론 위반자의 인적사항까지 공시함으로써, 일반 투자자가 불법행위의 구체적인 사실을 인지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금융위원회가 불법공매도 세력으로부터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고 불법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불법공매도의 거래정보를 원칙적으로 시장참여자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아가 불법공매도가 아니더라도, 신분증 도용을 통한 대출사기 등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의 요청시 해당 범죄의 내용 및 가해자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내역을 온전히 확인하고 추가적인 피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사기 및 횡령 등으로 50억원 이상을 갈취하거나 상습 보이스피싱 및 다단계 사기 등을 저지를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제범죄의 분야에서 가해자 공개를 통한 추가피해 예방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범죄를 당한 실명자가 피해 구제를 위해 피해거래 내역 등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는 불법공매도의 경우, 피해종목 명단을 공개하였으나, 금융실명법의 비밀조항을 근거로 위반자의 명단은 공개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물론 범죄의 사실은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금융위원회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제12부 역시 위반자의 공개는 금융실명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일반 금융소비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위반자를 포함한 거래정보 등을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는 법인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라면 공공기관이 공개를 거부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공매도 등의 경우 만약 위반자를 공개하게 된다면, 해당 위반자의 금융거래에 다소간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만약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과 같이 단순히 피해종목 및 수량만을 부분적으로 공개한다면, 피해를 입은 일반 투자자는 단지 사후적으로 피해사실을 뒤늦게 알 수 있을 뿐이며, 위반자는 비밀보장이라는 베일 뒤에서 동종 불법행위를 다시 저지를 수 있습니다. 위반자를 공개의무의 거래정보등에 포함시킴으로써, 일반 금융소비자는 자신의 금융자산에 대한 재산권을 침해한 주체를 인지하고 향후 거래에서 이를 대비할 수 있고, 금융회사 역시 불법공매도가 적발될 경우 위반사실이 공개되는 것으로 인한 불법행위 억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금융실명법상 제4조의 비밀보장의 대상에서 ‘불법금융거래로부터 투자자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경우의 피해거래정보’를 예외로 두어 공개하도록 하는 아래의 법개정을 청원합니다.

2. 청원의 이유 및 내용

가. 문제점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의 대상이 되지만, 동조항 제1호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의 거래정보는 비밀이 보장되기에, 불법공매도를 저지른 금융회사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해 처벌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공매도의 거래정보는 금융위원회가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공공기관으로서 보유하는 정보 가운데 다른 법률에서 비밀로 규정한 정보라 하더라도, 예외 없이 공개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금융위원회의 판단에

맡기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 및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 확립을 위한 기관으로서, 자본시장에서의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막고 일반 금융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불법금융거래에 관한 거래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의 문언상 해당 비밀보장 의무는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기에,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금융위원회는 해당 비밀보장 의무의 수범자가 아니라고 해석하여 반론할 여지 역시 존재합니다. 그러나, 거래정보가 금융실명법상 비밀로 보장되는 취지를 고려하여,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없애고 불법적인 거래의 경우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 동법 제4조 제1항 개정: 제8호 변경 및 제9호 신설

현행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 규정된 거래정보를 제외하면 그 거래정보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일반 금융피해자들은 금융회사등을 상대로 소송자료를 수집하기 어렵고 심지어는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지 못한 채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피해에 대한 제대로 된 구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이 예외조항에 추가하여 불법금융거래 정보를 비밀보장 항목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피해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해야 합니다.

<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8호 개정 변경(안) 및 제9호 신설(안)>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 (중략)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 (중략) …

8. 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 제176조 · 제178조 · 제178조의2 · 제180조 · 제180조의4를 위반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그 위반행위와 관련한 거래정보의 제공
9.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해당 법률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다. 동법 제4조 제2항 개정(변경)

이상과 같이 제4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에서 불법적인 금융거래에서의 거래정보를 비밀의무의 예외로 규정한다고 해도, 일반 금융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온전히 고지받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실명법 제2조 제1호에서 칭하는 “금융회사등”에 해당하지 않아, 제4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에서 해당 불법 거래정보를 비밀의 예외정보로 둔다고 해도, 제4조 제1항이 “금융회사등”에 적용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금융위원회가 정보의 제공주체가 되는 경우 해당 내용이 비밀로서 보호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해당 불법 거래정보가 공개의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에 관한 제4조에 조항을 신설하여, 제4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의 경우,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의 피해 구제의 필요성이 상당함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공개할 의무를 규정할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 금융실명법 제4조 개정 변경(안)>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에 의하여 금융회사등의 특정 점포에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후략)”

라. 동법 제4조 제7항 신설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의 경우, 불법공매도와 같이 법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의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 금융소비자는 자신이 불법에 노출되어 주가하락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인과관계를 인지하기 어려운 반면 해당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의 범위와 정도는 심각합니다.

위반자를 공고함으로써 불법금융거래를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문은 법인의 불법금융거래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법인이 공개될 경우 금융소비자 뿐만이 아니라 일반소비자에 대한 대외적 이미지에 큰 영향이 있어 손해가 크게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불법금융거래 공시제도는 법인에 대하여 특히 예방효과가 클 것입니다. 또한 해외에서도 공시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효과 역시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에서 불법공매도로 인한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만큼 예방효과가 있는 제도의 도입이 시급합니다.

따라서, 금융소비자가 자신이 입은 피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회사의 불법행위 유인을 억제할 수 있도록, 금융범죄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없어도 일반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 금융실명법 제4조 제7항 신설(안) >

“제4조 ⑦ 금융위원회는 제4조 제1항 제8호·제9호에 해당하는 거래정보등으로서 일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경우 거래정보등을 법 시행령 제6조의 범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